

##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 제도」 시행 공고

『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』에 의거,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을 위한 지정 및 등록제도 시행을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·개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일

산업통상부장관

I.

### 제도목적

-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·활용·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정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

II.

### 제도개요

- 대상분야
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
  - \*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-115호
  - \*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로봇, 방산
-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
  - \*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-139호
  - \* 인공지능, 첨단 모빌리티

- 주요내용

#### < 접수대상 >

- (지정제도) 기업인재개발기관등, 첨단산업아카데미
- (등록제도) 인재혁신전문기업, 전문양성인

## 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

- 목적 : 첨단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·인재혁신전담부서로 지정·지원

구분	내용
기업인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1개 기업의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</li><li>▪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</li></ul>
인재혁신전담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1개 기업의 교육훈련부서</li></ul>

- 신청자격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·관리하는 전담조직·부서를 보유하고 인적·물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

인적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전담인력) 다음 각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중인 기업     가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    나.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    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</li></ul>
물적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강의실) 첨단산업 인재혁신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</li><li>▪ (장비)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</li></ul>
교육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교육프로그램)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</li>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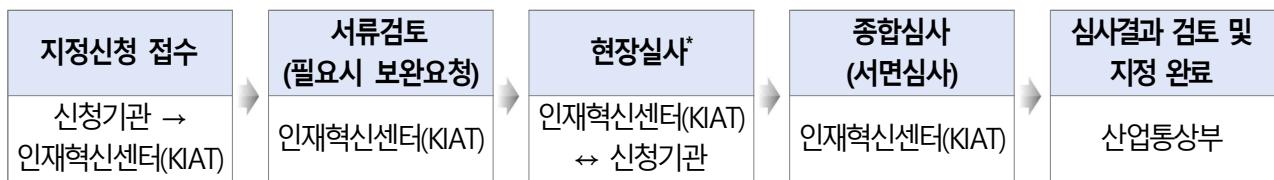
구분	소기업	중기업	중견기업	그 외의 기업
인적요건	전담인력	2명 이상	3명 이상	7명 이상
물적요건	강의실	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		
	장비	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		
교육요건	교육프로그램	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		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: 2명 이상
  - \*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: 3명 이상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: 7명 이상
- 그 외의 기업: 10명 이상

## ○ 제출서류

-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
  -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
  -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
  - 사업자등록증명
  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(해당시)
  - 공동운영협약서\*(해당시, 자유양식)
- \*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의 경우
-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

## ○ 심사절차 : 지정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



\*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

## ○ 심사기준

구분	심사항목
서류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신청서 등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·서류검토</li> </ul>
현장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강의실 보유 현황</li> <li>■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장비·기기의 보유 현황</li> </ul>
종합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담 교육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</li> <li>■ 강의인력 구성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첨단산업분야 인재개발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보유 현황의 적정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강의실, 장비 및 기기 등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첨단산업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</li> <li>■ 교육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</li> </ul>
종합심사 결과	
지정 대상 □ / 지정 비대상 □	

## ○ 지정기간 :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6조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

## ② 첨단산업아카데미

- 목적 :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산업계 주도로 신속히 양성·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·지원
- 신청자격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각호에 사업을 수행하고, 인적·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등은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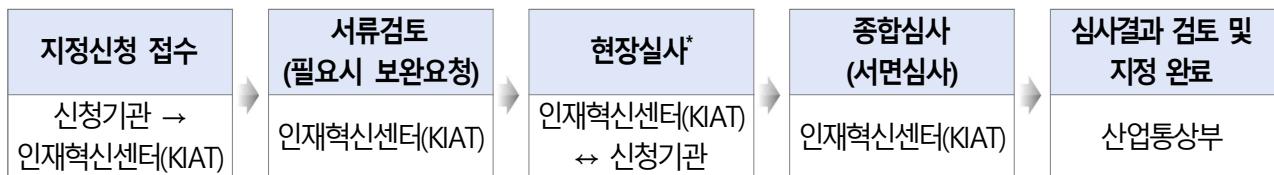
인적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전문인력)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명 이상(비상근 인력 포함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</li><li>나.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다.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라.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</ul></li></ul>
물적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교육시설) 300m<sup>2</sup></li><li>▪ (장비) 첨단산업 인재 양성*에 필요한 실습 장비 구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</li><li>나.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</li><li>다.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</li><li>라.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</li><li>마.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</li><li>바.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</li><li>사.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·시설의 구축·유지관리</li><li>아.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li></ul></li><li>▪ (교육프로그램) 연간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</li></ul>

- 제출서류

-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
-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- 사업계획서\*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  - \* 첨단산업아카데미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로 갈음 가능
-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\* 시설·장비: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교육시설이 임차인 경우), 건축물현황도, 장비등록·관리대장,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위치한 건물 또는 해당 층의 도면 등 (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), 장비등록·관리대장 등
  - \* 전문인력: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
-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
- 토지(건물)등기사항증명서
-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

○ 심사절차 : 지정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



\*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

○ 심사기준

구분	심사항목
서류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외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·서류 검토</li> </ul>
현장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적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</li> <li>전담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적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보유 현황</li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장비 보유 현황</li> </ul> </li> </ul>
종합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적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정성</li> <li>전담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적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보유 현황의 적정성</li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장비 현황의 적정성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</li> <li>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</li> </ul> </li> </ul>
종합심사 결과	
지정대상 □ / 지정비대상 □	

○ 지정기간 :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7조제5항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

### ③ 인재혁신전문기업

- 목적 : 첨단산업 기술 교육이 가능하고,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가능한 기업을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·지원
- 신청자격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고자 하고, 인적·물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음

인적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전문인력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3명 이상 보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</li><li>나.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</li><li>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</li></ul></li>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시설 및 기자재)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보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</li><li>나.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,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</li><li>다.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</li><li>라.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</li><li>마.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li></ul></li></ul>
물적 요건	

- 제출서류

-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
-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- 사업계획서\*

\*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: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[별표 1] 참고

-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\* 시설·장비: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임차 강의실인 경우), 건축물현황도, 장비 등록·관리대장 등

\* 전문인력: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

-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
  - 사업자등록증명
  - 사업의 직전 연도 실적증명원
  -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
- 심사절차 : 등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



\*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

### ○ 심사기준

구분	심사항목
서류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외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·서류 검토</li> </ul>
현장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적요건     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적요건     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보유 현황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</li> </ul>
종합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적요건     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적요건     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보유 현황의 적정성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요건      ■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■ 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요건      ■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</li> </ul>
종합심사 결과	
등록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/ 등록 비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	

### ○ 등록기간 :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8조제3항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

#### ④ 전문양성인

- 목적 :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산업 첨단기술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를 전문양성인으로 등록·지원
- 신청자격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전문양성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음

신청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li><li>▪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기술사·기능장 자격 :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[별표 2] 참고</li></ul></li><li>▪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</li><li>▪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</ul>
----------	--

교육 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전문양성인 등록심사 통과자는 등록교육 과정 이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등은 대상자에 별도 안내 예정</li></ul></li></ul>
----------	--

- 제출서류

-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
- 전문양성인 활동계획서
-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구분	제출서류
첨단산업 분야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(한글)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상장형, 수첩형)*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종이 자격증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</li></ul></li></ul>
첨단산업 분야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졸업증명서</li><li>▪ 경력(재직)증명서</li><li>▪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</li><li>▪ 이력서</li></ul>

- 주민등록등본
-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

- 심사절차 : 등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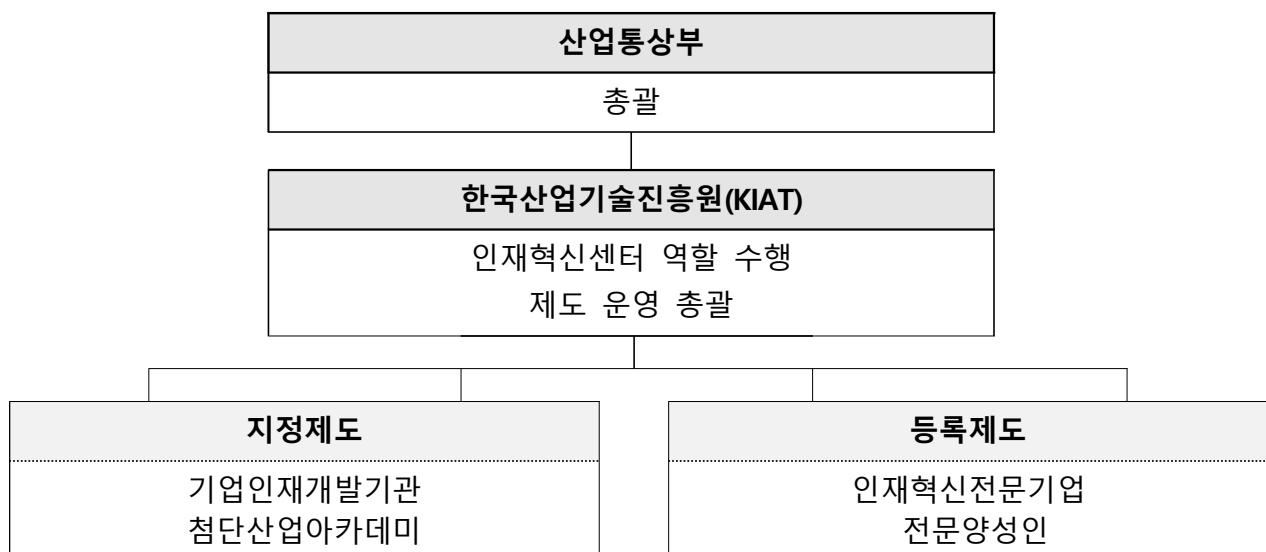
\* 등록교육은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

- 심사기준

구분		심사항목
사류심사	인적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문양성인 등록 자격 또는 경력 적정성 여부</li> </ul>
	기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문양성인 활동계획서 적정성 여부</li> <li>▪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</li> </ul>
심사 결과		등록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/ 등록 비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

### III. 추진체계 및 절차

#### 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 IV. 신청 안내

-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- 신청방법 :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전자우편 혹은 홈페이지\*로 접수
  - 전자우편: [innohuman@kiat.or.kr](mailto:innohuman@kiat.or.kr)

\*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추후 주소 별도 안내 예정
- 유의사항
 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·등록을 받는 경우 취소, 과태료 부과\*, 제재 등의 조치 가능
    - \*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8조(과태료), 시행령 제4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  - 관련 법령·규정·매뉴얼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
## □ 문의처

구분	담당	연락처
소관부처	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044-203-4227</li></ul>
인재혁신센터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02-6009-4040</li><li>▪ <a href="mailto:innohuman@kiat.or.kr">innohuman@kiat.or.kr</a></li></ul>

## V. 근거법령 및 규정

- 관련 법령
  -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하위법령
  -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하위법령
 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법령
 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

## □ 관련 규정

-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
-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
-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

### [붙임]

1.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하위법령
2.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 관련 고시
3. 인재혁신센터 지정 및 등록업무에 관한 운영요령
4. 제도별 신청 양식
5.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제도 안내 매뉴얼